

한·미 FTA 발효 및 협상 결과, 보완대책

자료 : 농림수산물부

◎ 한·미 FTA 발효 및 협상 결과

지난 2006년 협상 출범을 공식선언한 한·미 FTA가 3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전체 협상 대상 농산물 및 수산물의 32.8% 수준인 636개 품목(전체 1,938개 품목, HSK 세 번 기준)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즉시 철폐 대상 품목의 대부분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으로 관세 철폐가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커피·사료용 옥수수·포도주 등의 농산물과 갯지렁이·부화용

알 등의 수산물은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우리 농어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농산물 셰이프가드(ASG) 적용, 계절 관세 도입, 관세 철폐 유예 등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인 관세율을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여 3월 15일부터는 37.3%의 관세가 적용되며, 관세 철폐 기간 동안 농산물 셰이프 가드가 적용된다.

* 농산물 셰이프 가드(ASG) : 수입액이 정해진 물량을 초과할 경우 미리 정해진 고율의 ASG 발동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제도

주요 축산물 협상 결과

품 목	주요 협상 내용	관세율(%)		
		3.14까지	3.15부터	철폐시기
쇠 고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6개 세번 : 15년 철폐, 동 기간 농산물 셰이프가드(ASG) 적용 - ASG 발동물량 : 270천톤(1년차) → 354천톤(15년차, 매년 6천톤 증량) - ASG 발동세율 : 40%(1 ~ 5년차), 30%(6 ~ 10년차), 24%(11 ~ 15년차) 	40	37.3	2026년

품 목		주요 협상 내용	관세율(%)		
			3.14까지	3.15부터	철폐시기
돼 지 고 기	민감 2개 세번	<p>〈냉장삼겹살과 기타(갈비·목살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철폐, 동 기간 ASG 적용 - ASG 발동물량 : 8,250톤(1년차) → 13,938톤(10년차, 매년 6% 증량) - ASG 발동세율 : 실행세율(1 ~ 5년차), 실행세율의 70%에서 50%까지 인하(매년 5%) 	22.5	20.2	2021년
	냉장육	〈냉장 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	22.5	15	2014.1.1
	냉동육	〈기타 목살 제외〉	25	16.7	
	냉동 기타	〈목살〉	25	16	2016.1.1
닭 고 기		<p>〈냉동 닭다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닭고기 수입량의 70% 수준 	20	18	2021년
낙 농	치즈	〈체다 치즈〉	36	32.4	2021년
		〈체다 이외의 치즈〉	36	33.6	2026년
	버터	◦ 무관세 쿼터 14년 제공 : 1차년도 7,000톤(매년 복리 3% 증량)			
		◦ 무관세 쿼터 9년 제공 : 1차년도 200톤(매년 복리 3% 증량)	40	36%	2021년
천연꿀	◦ 현행관세 유지, 단 무관세 쿼터 제공 : 1차년도 200톤 ~ 5년차 225톤(5년차 이후 매년 복리 3% 증량)	243	243	-	

※오리고기 냉장 10년간 관세철폐, 냉동 12년간 관세(22.5)철폐

품목별 생산 감소 추정액

구분		연간			15년누적	연평균
		5년차	10년차	15년차		
축산	쇠고기	1,040	2,463	4,438	30,036	2,002
	돼지고기	1,640	2,065	2,065	24,378	1,625
	닭고기	589	1,087	1,087	11,557	770
	유제품	297	430	430	5,306	354
	기타	91	143	173	1,716	114
	소계	0	0	0	0(57.7%)	4,866

◎ 한·미 FTA 보완대책

1. 후속조치 완료 대책

항 목	대책 내용	주요 후속조치 내용
① 피해보전직불제발동요건 완화	◦ 발동요건 가격기준 : 85% → 90%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 : '12. 4. 18)
② 비과세 부업소득범위 확대 및대상 추가	◦ 축산 공제두수 범위 확대 * 소 : 30마리→50 / 돼지 : 500→700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 : '12. 2. 2)
	◦ 비과세 소득대상 추가 * (현행)양식어업→(추가)연근해·내수면어업	
	◦ 비과세 소득금액 증액 * (현행)1,800만원 → (증액)2,000만원	
③ 촉발기금확충	◦ '12년부터 10년간 2조원 확충	◦ '12년 예산 반영 * ('11) 5,481억원 → ('12) 6,914
④ 감골산업지원확대	◦ 감골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확대 * 거점산지유통센터, 고품질시설 현대화 등	◦ '12년 예산 반영 * ('11) 265억원 → ('12) 384억원
⑤ 이행지원센터지정	◦ FTA이행지원센터 지정·운영	◦ 지정('12. 3. 5) * 농업인등 지원센터 : KREI * 어업인등 지원센터 : KMI
⑥ 시설현대화사업확대	◦ 시설현대화(보조 + 융자) 지원규모 확대	◦ '12년 예산 반영 * ('11) 2,450억원 → ('12) 4,109
	◦ 대출 금리인하(3% → 1%, 융자만 지원 시)	◦ '12년 예산 반영 * 추가예산 확보(축산 42억원, 수산 20억원)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 확대	◦ 관련 예산 증액 *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등	◦ '12년 예산 반영 * ('11) 6,130억원 → ('12) 8,300
⑧ 종자산업육성	◦ Golden Seed Project 추진	◦ '12년 예산 반영 * ('12, 신규) 25억원
⑨ 조건불리직불제개선	◦ 지방비 부담률 조정(30% → 20%)	◦ '12년 예산 반영 * 추가 예산 55억원 반영
⑩ 수입사료 원료무관세 확대	◦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11개 → 21개) * 이 중 16개 품목은 무관세(현행 4개)	◦ 「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 '12. 1. 1)
⑪ 면세유 공급기간연장	◦ 원칙적으로 향후 10년 간 유지 * 1차연장('12.6월말 → '15.12월말)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 : '12. 3. 2)
⑫ 부가세 영세율적용 기간 연장	◦ 원칙적으로 향후 10년 간 유지 * 1차연장('11.12월말 → '14.12월말)	
⑬ 면세유 공급대상추가	◦ 공급대상 추가 :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 미만) 및 농업용 1톤 트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시행 : '12. 3. 15)

2. 추진 중인 대책

항 목	대책 내용	주요 후속조치 내용
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12. 29 국회 본회의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13. 1월 까지)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13. 1월 까지)
② 발농업직불제신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부터 발농업 직불제 도입 * 19개 품목 대상 재배면적 당(ha) 연간 40만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및 시행규칙 개정('12. 4월 까지) ◦ 사업시행지침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직불금 지급('12. 12월 까지)
③ 조건 불리수산직불제신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수산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 육지로부터 50km 이상 이격된 어촌마을에 가구 당 49만원 지급(본사업 : 8km 이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지침 마련 등(3월 중) ◦ 지자체 설명회(4월 중)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지방비 확보(6월 중) ◦ 직불금 지급('12. 11월 까지)
④ 친환경직불금단가 인상 및지급 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무농약농업에 대한 직불금 단가 인상(50% 수준) * 단가(만원/ha) : (논) 31 ~ 39 → 40 ~ 60 (밭) 67 ~ 79 → 100 ~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지침 개정(3월 중) ◦ 직불금 지급('12. 12월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의 경우 지급기한 연장(3년 →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개정('12. 4월 까지)
⑤ 임차농 보호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 정비(농지법 개정, '11.12.29) * 최소계약기간(3년) 보장, 임대차 확인제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개정(시행 : '12.7.18) ◦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12. 7월 까지)
⑥ 농사용 전기료적용 대상 시설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시설 추가 * 대상 :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시설 실태조사('12.3월까지) ◦ 한전 전기 공급 약관 개정('12. 4월까지)

1.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 완화

- (개요)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기준 가격을 과거 5년(최고·최저치 제외) 평균가격의 85%에서 90%로 상향 조정
- * 발동 요건 및 보전 수준 :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

- (기타 조치 사항) 축산업의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방법 설정
 - 축산업의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생산면적, 생산량 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 따라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12. 2. 28)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별도의 기준을 설정

구분	산출 공식
일반 기준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낙농	납유량(ℓ) × 지급단가 × 조정계수
양육	사육 마릿수 × 마리당 연 평균 녹용(녹각) 생산량(kg) × 지급단가 × 조정계수
산란계	사육 마릿수 × 평균 산란율(%) × 365 × 지급단가 × 조정계수
양봉	사육 봉군수 × 봉군 당 연 평균 부산물 생산량(kg)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친환경 오리 지불금 지원액 개선 건의(한국오리협회)

구분	현행		개선요구		비고
	친환경 축산물		친환경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	무항생제	유기	
계란	1원/개	10원/개	1원/개	10원/개	
육계	60원/마리	200원/마리	60원/마리	200원/마리	
오리알	2원/개	20원/개	5원/개	50원/개	계란, 육계의 4.8배 적용
오리	120원/마리	400원/마리	290원/마리	960원/마리	

※ 개선대책 <사육 소요면적 기준 지원액 적용>

출하되는 마리당 지원되는 친환경 직불금의 특성상 오리 지원액은 육계 기준의 최소 4.8배(육계보다 4.8배 많은 사육면적 소요)많은 지급기준을 적용.

오리와 육계의 생산비가 같다고 가정하더라도, 동일 축사 면적에서 사육(생산)시 오리는 육계보다 4.8배 적게 생산하는 개념이므로, 단순히 현행과 같이 육계의 2배 수준의 지원액 적용은 불합리함.

2.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및 대상 추가

- (개요) 소와 돼지의 공제두수 범위를 확대하고,

연근해·내수면어업을 비과세 부업소득 대상으로 추가하며, 비과세 부업소득 금액을 상향

(기존) 부업규모(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소득세가 감면되며, 부업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연 1,800만원까지 비과세



(변경) 부업규모(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소득세가 감면되며, 부업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연 2,000만원까지 비과세

-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는 농어가 수

구분	전체 농어가 수	기존 수혜 농어가 (전체농어가 대비)	추가 수혜 농어가 (전체농어가 대비)	전체 수혜 농어가 (전체농어가 대비)
〈축산 공제두수 확대〉	(’11년 기준)			
한육우	163천호	30마리 미만 : 138천호(84.7%)	50마리 미만 : 12천호(7.4%)	150천호(92%)
젓소	6.1천호	30마리 미만 : 0.7천호(11.5%)	50마리 미만 : 1.6천호(26.2%)	2.3천호(37.7%)
돼지	6.3천호	500마리 미만 : 2.7천호(42.9%)	700마리 미만 : 0.5천호(7.9%)	3.2천호(50.8%)
〈비과세 대상 추가〉	65,775호 (’10년 기준)	양식 : 17,386호(26.4%)	연근해·내수면 : 48,389호(73.6%)	65,775호(100%)

3. FTA 이행 지원센터 개소

- (개요)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 및 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농어업인들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FTA 이행 지원센터」를 지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농산물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인등 지원센터」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수산물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어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

- 주요 기능

- (조사·분석) 주요 농산물 및 수산물의 수입량

과 가격을 매월 조사하여 협정 이행이 국내 농산물과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매년 3월 말까지 피해보전직불제도 및 폐업 지원제도 발동 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보고

4.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확대

- (개요) 기존 시설현대화 사업(보조+융자)의 예산을 ’11년 대비 1,659억원 증액하고 보조 없이 융자만 지원받는 사업(이차보전)을 신규 도입

| 축산수첩 |

■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범위 확대

구분	2011년		2012년(계획)	
	예산(억원)	지원규모(개소)	예산(억원)	지원규모(개소)
축사시설현대화	1,633	720	2,760	1,355 (증 635, 88.2%)
시설원예품질개선	326	619(279ha)	722	3,000(930ha) (증 2,381, 384.6%)
과수시설현대화	491	10,810(3,100ha)	627	11,616(3,922ha) (증 806, 7.5%)
축사시설(이차보전)	-	-	42 (실지원 : 2,125)	1,063
양식시설(이차보전)	-	-	20 (실지원 : 768)	220
계	2,450	12,149	4,171 (실지원 : 7,002)	17,254 (증 5,105, 42.0%)

5. 면세유 공급기간 연장

■ 기존 면세유 감면실적

(단위 : 천ℓ,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공급량	공급액	면세액	공급량	공급액	면세액	공급량	공급액	면세액
농업용	1,975	18,337	11,535	1,898	14,110	11,208	1,923	16,410	11,353
어업용	994	7,898	6,021	1,122	6,723	7,522	1,103	7,743	7,005
계	2,969	26,235	17,556	3,020	20,833	18,730	3,026	24,153	18,358

■ 농·어가 당 조세 감면액('10년 기준, 면세액/농·어민 수)

53,749 = 약 1,303만원

* '10년 면세유 공급 실적이 있는 농민 수 : 936,923명 / 어민 수 : 53,749명

- 농업인 1인 당 감면액 : 1,135,300,000,000 / 936,923 = 약 121만원

- 어업인 1인 당 감면액 : 700,500,000,000 /

6.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간 연장

*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수출재화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의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구분	종류
농·어업용 공통	비료, 농약, 사료
농업용 기계(32종)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관리기, 동력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 콤바인, 곡물건조기, 동력중격제초기 등
축산업용 기자재(39종)	육추기, 양계용 케이지,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니플, 부리절단기, 포유기, 양돈 케이지, 이표기 등
임업용 기자재(15종)	임업용 동력천공기, 임업용 약제주입기, 산불진압용 펌프, 임업용 동력기계톱, 임업용 원치 등
어업용 기자재(37종)	어망, 부자, 집어등, 자동조상기, 양망기, 양승기, 통발, 초호, 낚시, 연승, 발장, 해녀용 잠수복 등
친환경기자재	키토산, 목초액, 천적

7.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추가

- (개요)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을 추가하고, 기존 지원 대상 기종의 지원 범위를 확대
 - (추가)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火食 사료용)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 형식은 제외
 - (확대) 로더의 지원범위가 현행 자체중량 2톤 미만에서 4톤 미만으로 확대
- (공급량)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연간 379ℓ 를 정

량 공급하고, 그 밖의 기종은 현행과 같이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건표 기준으로 공급

*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기준은 농작업(농기계 운반, 농작업장까지 이동 등)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험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반영

* 대당 평균 배정량(ℓ) : 로더1,200, 화물자동차379, 굴삭기181, 사료배합기1,000

- (효과) 화물자동차 등을 농업에 이용하는 농가 면세유 혜택 확대

기종명	보유대수(대)	대당 연간소요량(ℓ)	연간 소요량(kℓ)	ℓ당 면세액(원)	조세감면 추정액(백만원)	대당 연간 조세감면 추정액(원)
농업용로더(4톤미만)	1,000	1,200	1,200	692	830	830,000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이하)	368,000	379	139,472	692	96,515	262,000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3,500	181	634	692	439	125,000
사료배합기(화식 사료용)	500	1,000	500	692	346	692,000
계	373,000		141,806		98,130	

※ 자료 : 통계청, 농협중앙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면세액은 2012. 2. 1일 기준 농협주유소 평균 가격으로 계산

※ 조세감면액 = 보유대수 × 대당 연료소요량 × ℓ당 면세액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기종 관리 방안

-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기종에 한하여 공급
- ② 로더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신고증(스티커) 의무 부착(신고단계에서 관리번호를 부여, 해당 기종 별도 전산관리)
- ③ 추가배정 제한 등 면세유 배정량 상한제 운영

* 농업용로더(4톤미만) 최대 2,000ℓ/년 이내, 농업용 1톤 트럭 379ℓ 정량 배정

④ 공급대상 추가 기종 보유현황을 지역농협에 매년 신고

* 타 기종은 농림특례규정에 의거 2년(홀수년도)마다 신고

8. 발농업 직불제 신규 도입

- (개요) 19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재배 면적 ha당 연간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

* 밀, 콩,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피·울

무), 팥, 녹두, 기타 두류(완두·강낭콩·동부), 사료 작물(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 (효과) 발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발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생산기반을 유지
- (대상농지) 공부(公簿)상 밭[田]으로서 당해연도에 발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대상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발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0.1ha 미만이거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② 대상농지에서 조건불리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 쌀 고정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추진계획) '12년 12월 까지 발농업 농가에 직불금 지급 완료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에 발농업 직불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4월 까지)
 - 사업시행지침, 전산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 마련(7월 까지)

9. 조건 불리 수산 직불제 신규 도입

- (개요)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어가에 가구당 연간 49만원의 직불금을 지급
 - * '13년부터 본사업(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가) 추진

10.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시설 추가

- (개요)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되는 시설 중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농업용 시설*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
 - * (대상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 시설, 수산물 저온 저장 시설, 굴껍질 처리장,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가축분뇨 처리 시설
- (추진 계획) '12년 4월 까지 한전 전기 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 적용
 - 대상 시설에 대한 한전 실태조사(한전) : 3월 까지
 - 적용기준안 마련 및 약관개정(한전 및 지경부) : 4월까지
 - * 전기공급약관 개정 절차 : 한전이사회 의결 → 지경부 전기위원회 심의 → 인가(지경부 장관)

구분	현행	개선
산지유통센터(APC) (318개소)	○ 농협·영농법인 - 농사용 : 저온저장 - 산업용 : 선별, 포장, 가공 등	- 전과정 농사용 적용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128개소)	○ 농축협·영농법인 : 산업용	- 산업용을 농사용으로 전환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140개소)	○ 어업인·어촌계·수협·영어법인 : 산업용	- 산업용을 농사용으로 전환
굴 껍질 처리장(박신장) (410개소)	○ 어업인·어촌계·수협·영어법인 : 산업용	- 산업용을 농사용으로 전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6개소)	○ 수협·영어법인 : 산업용 - 농사용 : 제빙·냉동 - 산업용 : 위판, 선별, 가공, 오폐수처리	- 전과정 농사용 적용

*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128개소 중 51개소) 및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6개소)는 '15년까지 건립계획된 개소수 포함